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8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현함에 있어, 행정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행복 실태 조사와 행복 격차 지표를 별도로 개발·관리하기 보다는, 행복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통합해 분석·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와 제12조 삭제, 안 제11조).
- ‘행복영향평가’와 ‘행복증진교육’ 등은 의무 규정 보다는 재량 규정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안 제16조).
- ‘행복인지 예산’은 ‘행복’ 가치의 반영여부를 예산 편성에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의 의무로 명시함(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응해야”를 “최대한 협조해야”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교육을 실시한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p>	<p>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시민 행복 실태 및 행복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u></p> <p>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11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p> <p>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p> <p>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행복지수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제12조(행복 격차 지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행복 격차 지표의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p>	<p><삭 제></p>
<p>제13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p>	<p>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해야 한다.</p> <p>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행복인지 예산) 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행복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삭 제〉</p>
<p>제16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p> <p>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p>	<p>제14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7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측정, 제12조에 따른 행복 격차 지표 개발 및 측정, 제14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p>	<p>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정안과 같음)</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 격차”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8.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